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20
----------	------

발의연월일 : 2025. 10.

발의의원 : 김보경 의원,

신동윤 의원, 박영동 의원

1. 제안이유

1인 가구 및 사회적 고립의 증가로 높은 자살률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이에 자살예방 및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기 위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나.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의 날 등에 관한 사항(안 제7·8조)

마.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수립·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의 예방 및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상담·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과 연계를 할 수 있다.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 교육·홍보를 통해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살예방의 날 및 주간 운영)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과 그로부터 1주일 자살예방 주간에 자살예방을 위한 행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법 제24조 및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그를 처리 및 관리 등을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2023.7.11.
일부개정, 2024.7.12. 시행)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자살예방의 날)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상담치료·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과 자살위험자 대상 상담, 치료 등과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의 지원(안 제6조),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의 날 및 주간 운영을 위한 교육, 홍보 등(안 제7조·8조)에서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안 제5조에 따른 자살예방시행계획의 경우 소관부서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음
- 안 제6조~제8조에 따른 재정요인의 경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2025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 사업비

구분	합계	보조금			구군비
		소계	기금	시비	
총사업비	239,048	179,286	119,524	59,762	59,762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77,200	57,900	38,600	19,300	19,300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114,468	85,851	57,234	28,617	28,617
자살 유족 지원사업 운영	47,380	35,535	23,690	11,845	11,845

※ 기금 25%, 시비 25%, 군비 25%

작성자

소속 및 직위

달성군의회 의원

성명(연락처)

김보경 (☎ 2052)